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3. 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16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17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5. 3. 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담배사업법」 및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따라 제정된 조례내용 중 경쟁 제한적 내용이나 자의적인 내용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정정(안 제1조)
-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삭제 (안 제3조제2호)
- 협약의 취소 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 삭제(안 제8조제1항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담배사업법」(이하 ‘법’) 및 「담배사업법시행규칙」(이하 ‘규칙’)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중 경쟁 제한적인 불평등한 조

문 및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제2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“기관 또는 단체”를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부분이 2014.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,
-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협약의 취소 사유 중 “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”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이므로 삭제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

○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항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또한, 협약 취소 사유 중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조문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처리에 역행하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 선정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에서는 사실조사 의뢰 대상으로 “관련 기관 또는 단체”로만 규정하고 있으나, 우리구 본 조례에서는 “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기관 또는 단체”로 한정하고 있는 바, 이는 영리법인 등 타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, 이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실조사 의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에서 “경험과 인력을 갖춘” 및 “비영리 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” 문구 삭제
(안 제3조제2호)

나. 사실조사 협약 취소 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 삭제
(안 제8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담배사업법」,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)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4.11.13.~2014.12.3, 2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”을 “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”을 “담배와 관련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“관련 기관 또는 단체”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<u>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</u>를 말한다. <p>제8조(협약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<u>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</u> 3. (생 략) <p>② (생 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담배와 관련된</u> ----- ----- -----. <p>제8조(협약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<p>〈삭 제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(현행과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